

‘鄉’을 벗어난 鄉約

- 17세기 서울의 相觀會 결성과 그 의미 -

이민정*

〈차 례〉

- 머리말
- 宋時烈의 「相觀會序」
- 상관회 결성의 목적
- 상관회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의미
- 맺음말

[국문초록]

1670년 경에 서울의 마포 일대에 거주하던 젊은 유생들은 강학을 위한 학문 공동체인 相觀會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중국 呂氏鄉約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규율하고 상호간의 연대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約憲을 만들었다. 그들은 향약을 실천한다는 자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상관회 결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宋時烈에게 서문과 약헌의 수정을 부탁하였고, 이에 송시열은 이들의 행동을 기념하고 격려하는 「相觀會序」를 지어주었다. 그러나 수도에서 ‘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임의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친목과 선행을 독려한다는 의미로 ‘상관회’로 그 명칭을 정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후대에 李緯의 기록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전해졌는데, 이때에는 상관회의 구성원들이 향약을 실천하는 차원의 강화 모임을 결성했다는 맥락은 생략되고, 단지 강화회로서의 상관회의 면모만 전달되었다.

상관회 명칭과 그 기본 성격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향약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보여준다. 「상관회서」에는 향약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이 상관회의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약이라는 제도가 지방 혹은 향촌사회라는 공간에 확연하게 의지하였다는 것이 현대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이고, 애초에 여씨향약의 출발 지점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향약을 실천하겠다는 상관회 구성원들의 의지는 향약이 공간적 한계를 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

어서, 공동체의 자기규율을 위한 제도로서 확장적이고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주제어] 향약, 상관회, 공동체, 서울, 향촌, 송시열

1. 머리말

조선에서의 향약의 성격은 향촌의 사회조직과 권력구조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16-17세기에는 사족중심 향촌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향약이 재지사족의 향촌교화 및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하다가 대략 18세기부터는 향촌에서의 사족의 鄉權이 동요하고 관주도의 향촌통제책이 강화되면서 향약의 자치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 향약이 재지사족의 결집체인 鄉案 입록자를 중심으로 행사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향약의 기본 성격이 자율성과 자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재지사족을 매개로 향촌지배를 관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재지사족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협상’의 증거가 향약을 통한 지방통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향약을 둘러싼 연구사의 맥락이 공간적으로는 향촌사회에 한정되며, 향약을 둘러싼 권력동학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향약의 연구사적 경향은 조선후기 향약이 수행했던 핵심적인 역할 및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풍부한 사례를 접하게 함으로써 그 역사성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향약의 기본 정신이 ‘化民成俗’, 즉 教化(도덕화)에 있다는 사실은 정작 조선에서의 향약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 수식어로만 그치고 있다. 백성에 대한 교화는 지배층 혹은 국가

1)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의 향약의 성격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정진영,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 1990;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19, 1991. 다만, 한상권의 경우 이미 17세기 전반기부터 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향약기구의 구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17세기 후반에는 향약이 수령권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향약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사회의 권력관계의 시기적 구분에 대한 견해가 약간 다르다.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1984)

의 통치 용이성을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설명 속에, 도덕화를 강조하며 출발했던 향약의 기본 정신이 조선후기 어떤 역사적 현상을 만들어 냈는지에 관심이 부족하다. 향약이 조선후기 국가-지방, 관-사족 등의 권력구조와 그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그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 연대와 자기규율을 위한 제도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더욱 다양한 향약의 역사성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자기규율과 상호연대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향약을 살펴보기 위한 소재로써 조선후기에 서울에서 결성된 ‘상관회’라는 강학 모임을 다룰 것이다. 상관회는 1670년 이전에 만들어진 서인 노론 계열에 속하는 서울의 젊은 유생들의 강학을 위한 모임의 명칭이다. 상관회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일화는 송시열이 지어준 서문에 서술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 서문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관회의 성격과 상관회 구성원들이 규정하는 이 모임의 정체성을 추적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선후기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향약을 규정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규명할 것이다. 즉, 현대에 이해되는 ‘향촌 지배의 도구로써의 향약’이라는 시각을 넘어선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2. 宋時烈의 「相觀會序」

송시열이 1670년(현종11)에 지은 「相觀會序」에서는 서울사람 유명신과 그의 동지들이 규약의 명칭을 ‘상관회’로 짓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이것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아쉽게도 상관회 규약 내용 및 운영 방식, 활동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료나, 구성원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상관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한 사료는 현전하지 않는다. 다만 상관회의 면모를 전하는 주변인들의 몇몇 기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모임의 결성 배경과 목적, 구성원 등을 알 수 있다. 송시열이 작성한 「상관회서」가 그 대표적인 글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이 글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관회

의 면모를 재구성하고 상관회 결성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려 한다.

「상관회서」의 내용에 따르면, 1670년 4월 俞命新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부터 華陽洞에 있는 송시열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몇 가지를 부탁했다고 한다.²⁾

저희는 같은 마을 사람으로, 아침저녁으로 서로 모여 단지 시시덕거리며 농담만 하고 마음을 쓰는(用心) 데가 없으니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 몇명과 함께 대략 呂氏鄉約을 모방하여 條制를 세우고 서로 規戒하려 하니, 당신께서 만약 이를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마디만 서문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條制를 윤색해주시고 이어서 名號를 지어주신다면 마땅히 받들어 따르고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³⁾

위의 내용에서 유명신이 서울에서부터 송시열을 찾아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부탁 때문이었다. 하나는 자신들이 여씨향약을 모방한 조항(條制)을 만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서로 깨우치고 규율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를 기념하는 서문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자신들이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만든 향약 조항을 윤색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다듬어 달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부탁은 자신들이 지은 규약의 이름(名號)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송시열은 유명신 및 그의 동지들이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만든 규약의 이름을 ‘상관회’로 지어주었다.

유명신이 송시열에게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그와 그의 동지들이 서울의 한 지역에서 왜 여씨향약과 같은 규약을 만들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유명신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모여서 잡담이나 농담만 나누며 마음 쓰는(用心) 대상이 없이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스스로

2) 이 시기에 송시열은 잠시 도성을 떠나 화양동에 들어가 있었다. (『송자대전 - 부록』 권6, 「연보」)

3) 『송자대전』 권138, 「相觀會序」, “杞溪俞君命新氏來自京裏, 以諸君子之意, 教余曰吾儕里閭人, 朝暮相聚, 只詔詔笑語, 而無所用心, 殊甚無謂. 顧與同志若干人, 略倣呂氏鄉約, 立爲條制, 以相規戒, 吾子如不以爲不可, 則願爲一言以序之, 且潤色其條制, 而仍爲名號以賜之, 則當奉承而不敢違也.”

한심하게 생각하였다. 그가 문제라고 여긴 현상은 범죄나 도덕적 타락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얼핏 보면 문제가 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변화의 필요를 느낀 이유는 ‘마음을 쓴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用心’이 없는 상황을 문제시한 사람 중에는 공자도 있었다. 그의 어록 『논어』의 「陽貨」에는 하루종일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마음 쓰는 데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곤란한 일이며, 차라리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이 낫다는 발언이 실려 있다.⁴⁾ 이는 장기나 바둑 같은 오락의 유용함을 알리는 말이 아니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말을 사람이라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⁵⁾ 비록 잡기에라도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教化의 가능성이 있지만, 의지 자체가 없이 자포자기한 사람은 聖人도 그를 어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⁶⁾ 즉, 유명신과 그의 동지들은 스스로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마음을 쓸 줄 아는 의지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유명신과 그의 동지들이 마음을 다잡고 변화를 위하여 택한 방법은 바로 자신들을 규율할 수단을 마련하여 이를 지키고자 약속한 것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바, 그는 송시열에게 ‘呂氏鄉約을 모방하여 條制를 세우고 서로 規戒하려 한다’고 하였다. 북송대 藍田 여씨 집안에서 향촌 교화를 위해 만든 여씨향약은 주희에 의하여 수정되어 「增損呂氏鄉約」으로 조선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다. 16세기 이후 사림과와 李珥, 李滉 등 향약을 시행하고자 한 인물들은 주희가 전한 여씨향약을 골자로 하되 당시 조선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향약을 만들었다.⁷⁾ 유명신이 송시열에게 여씨향약을 모

4) 『논어』, 「양화」, “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哉.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已.”

5) 『思辨錄』 권3, 「第十七陽貨」, “子曰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哉.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已. 人之生也, 必有所爲, 人而無所爲則不得其所以爲人, 是天地之一棄物而已, 博奕非賢, 乃賢乎此爾.”

6) 『성호사설』 권20, 「博奕」, “聖人有博奕賢乎已之教. 余嘗有疑於導人雜技也. 世之濫食于此者, 殆若狂易, 反不若飽煖無所用矣. 然偶思得之其要在一難字, 難者爲教化發也. 彼雖如此, 若善誘而回頭, 則猶可以進步向上, 其怠惰自棄, 聖人亦無奈何也. 聖人之導掖人也, 見其彼反勝此故云爾. 看經一字之誤, 或致敗教, 可不慎哉.”

7) 이성무, 「呂氏鄉約과 朱子增損呂氏鄉約」, 『진단학보』 71, 1971; 한상권, 「16·17세기 鄉約의 機

방하여 향약문의 구체적 조목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서로를 規戒하려 한다는 계획을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用心을 결심하고 이를 規戒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약의 형식을 띤 규약을 정하고 이의 시행을 결의하였다.

송시열은 이와 같은 사정을 서문 앞에서 소개한 뒤에,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서문을 써 달라는 유명신의 첫 번째 부탁에 대한 화답이었다. 서울에 향약을 실천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를 기념하면서 송시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였다. 하나는 향약 시행의 역사적 계보를 제시하면서 이들의 시도가 유가의 통치 이념에 충실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향약 시행의 본질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우려가 섞인 당부였다.

유명신과 그의 동지들의 향약 시행 의지에 대한 칭송과 당부를 전한 후에, 송시열은 유명신의 두 번째 부탁과 세 번째 부탁에 대한 답을 하였다. 유명신의 두 번째 부탁은 자신들이 지은 규약의 문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송시열은 자신이 함부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례』, 『주자증손여씨향약』 및 퇴계와 율곡 선생이 지은 향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합당한 것을 취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으며, 『朱子大全』에 실린 주희가 작성한 공문(公移) 두 편에도 백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아울러 참고하라고 하였다.⁸⁾ 유명신 등이 정했다는 구체적인 절목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그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송시열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용을 수정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모범으로 제시된 주례-주자증손여씨향약-조선의 退·栗 향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향약의 보편적 참고체계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신 등의 수정본 역시 일반적인 향약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構成 性格, 『진단학보』 58, 1984.

8) 『송자대전』 권138, 「相觀會序」, “若其潤色之云, 則淺陋者非其任矣, 惟諸君子悉取周官及朱子增損呂氏約及退溪栗谷二先生所定之宜於今者而行之, 則夫誰曰不可. 又朱子大全有公移二編, 率多庸民之語, 亦可參互也.”

마지막으로 유명신이 부탁한 것은 향약 시행을 위하여 만든 규약의 이름(名號)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규약을) 부르는 명칭에 있어서는, 수도에서 ‘향’으로 이 맹약을 호명하는 것이 (실상과) 제목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程顥의 ‘봉우끼리는 서로 만나서(相觀) 좋은 점을 서로 본받아야 한다’는 말과, 司馬溫公의 眞率會의 뜻을 취하여 ‘相觀會’라고 한다면 마땅할 듯하니, 제 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9)

위의 발언에서 마침내 이 규약의 명칭이 ‘상관회’로 지어진 이유가 드러난다. 송시열은 유명신 등이 규약의 이름에 ‘鄉’자를 쓰는 것은 서울에서 시행될 규약의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것이 아무리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만든 ‘향약’이라도 시행 공간이 ‘鄉’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라는 공간을 강하게 의식한 발언이었다. 따라서 유명신 등의 규약 명칭은 정자와 사마광의 고사를 인용하여 ‘상관회’가 되었다.

본래 ‘相觀’이라는 말은 『禮記』 「學記」에 실린 말로, ‘서로 보고 (좋은 점을) 본받는 것을 摩라고 한다.’는 데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¹⁰⁾ 이 예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북송의 정호는 ‘봉우끼리 강습을 함에, 서로 보고 (좋은 점을) 본받는 공부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¹¹⁾ 하였다. 유명신과 그의 동지들이 애초에 모여 규약을 만들고 서로를 규율하고 독려하고자 한 의도를 잘 반영한 말이 ‘상관’이었다. 또한 司馬光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양에서 그 지역의 원로들을 모아서 만든 진솔회는 귀천을 따지지 않고 참석한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 친목을 도모하며 연회를 즐기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마광의 진솔회는 조선에서도 각종 친목 모임의 모범이 되어 序跋류에 빈번하게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송시열 역시 유명신 등의 모임을 진솔회에

9) 『송자대전』 권138, 「相觀會序」, “至其號名之稱, 則輦觀之下, 鄉以約爲名, 似不著題, 若取程子朋友相觀而善之語及溫公眞率會之意, 稱之以相觀會似宜, 諸君子以爲如何.”

10) 『예기』 「학기」, “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不陵節而施之謂孫, 相觀而善之謂摩, 此四者, 教之所由興也.”

11) 『近思錄集解』 권2, 「爲學」, “朋友講習, 更莫如相觀而善工夫多.”

비견하며 이들이 서로 오래 화목하기를 기원하였다. 요컨대, 송시열은 정호와 사마광을 인용하며 유명신 등의 규약을 ‘상호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뜻을 잘 나타내는 명칭을 고사를 인용하여 부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상관회의 탄생 배경과 결성 목적, 이 모임의 의미 등에 대하여 송시열의 목소리를 빌어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 「상관회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아직도 남아있다. 첫째, 유명신과 그의 동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상관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면모는 이 모임의 성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이지만 아쉽게도 서문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사료를 통하여 상관회 구성원의 면면을 추적할 수 있다면 이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관회 회원들이 여씨향약의 내용을 모방한 규약으로 자신들을 규율하려 한 사실에 대한 송시열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는 수도에서 ‘향약’을 표방한 것을 수정하고 그 명칭을 정호와 사마광의 사례를 인용하여 사대부들의 상호 규율을 위한 친목 모임임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가 수도에서 향약을 시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이를 수정하였다는 「상관회서」의 진술에서 이 사실이 드러난다. 수도(京)와 지방(鄉)은 행정편제와 조직, 기능 등에서 구별되는 공간이며, ‘향약’은 말 그대로 사대부 주도의 향촌 교화와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적 규약이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조선시대의 향약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송시열의 생각 역시 이러한 통설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상관회의 회원들이 향약의 형식을 채택하여 스스로를 규율하려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송시열이 보기에 이들의 모임은 사마광의 진솔회 같은 성격이 강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향약의 형식과 내용으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유명신 등과 송시열이 향약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었던 것일까? 등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규명하기로 한다.

3. 상관회 결성의 목적

상관회의 구성원의 면면에 대해서 「상관회서」가 전하는 정보는 한정적이다. 송시열의 「상관회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서문을 부탁하여 그를 찾아온 유명신과 그가 ‘同志’라고 밝힌 사람들이 상관회 운영 주체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李緯가 쓴 「右參贊權公神道碑」와 「郡守李公墓誌」에는 상관회 구성원의 면모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바로 이 신도비문과 묘지의 주인공이 상관회 회원이었다. 이 자료를 통하여 상관회 운영 주체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상관회 결성의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우참찬권공신도비」에 실린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이 신도비의 주인공은 權愔(1653-1730)으로, 본관은 安東, 자는 敬仲이며 權讓의 아들이다. 권성은 조선의 개국공신 權近의 10대손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한양에 거주했으나 광해군 대에 權鐸이 柳希奮을 비롯한 척족을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가 귀양을 가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조부인 權侄 대에 집안의 농장이 있던 충청도 한산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권성의 아버지 권양은 효종대에 별시 병과로 합격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숙종대에 司諫에 마지막으로 임명될 때까지¹³⁾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권양은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懷德에 기거하면서 대표적인 서인 산림인 송준길의 문하로서 호서의 문인들 및 교류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그의 정파적 성향은 서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¹⁴⁾

권성은 1687년(숙종 13)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주로 숙종대에 관료로 활동하였다. 李奮, 金昌集, 李緯 등 노론계 인사들과 교류하였으며, 신임사회로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이력으로 보아 정파적 입장이 노론

12) 이하의 권성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모두 李緯의 문집인 『陶菴集』 권30, 「右參贊權公神道碑」의 서술에 의거한다.

13) 『숙종실록』 28권, 숙종 22년 8월 19일 임인.

14) 권양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知足堂先生實紀』(국립중앙도서관 古2511-07-45-81)의 「行狀」과 「年譜」에 의거한다. 이하 권양에 대한 정보도 동일하다.

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참찬권공신도비」에 따르면 권성은 평안·황해·강원·함경·경상·충청도 등의 관찰사를 역임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명관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특히 江界府使와 義州府尹 재직시에 국경지역 단속, 산성 관리, 군사 훈련 등에 성과를 바탕으로 관서의 관찰사로 승진하여 이 지역의 변방 수비 계획을 세우는 데에 공을 세웠다. 관서지방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병조·형조·공조·호조 등의 참판, 사간원의 대사간, 한성부의 좌윤·우윤, 동지의금부사, 비변사 제조 등에 두루 제수되었지만 대부분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즉, 권성의 관료로서의 업적은 주로 지방관으로서의 時務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참찬권공신도비」에는 권성이 참여한 상관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공이 젊을 때에 뜻을 함께하는 선비들과 서로 학문을 권면하고자 約憲을 논의하여 만들었는데, 우암 선생이 이를 상관회라 이름을 지었다.’(公少與同志之士, 相勉以問學, 講成約憲, 尤菴先生命之曰相觀會.)는 구절이다. 상관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상관회서」에서 유명신이 전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유명신이 ‘동지’라고 칭했던 상관회의 구성원 면모에 더하여 한 가지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이 여씨향약을 모범으로 삼아 約憲을 만들게 된 구체적인 목적이다. “서로 학문을 권면하고자”(相勉以問學) 약헌을 만들었다는 대목에서는 바로 상관회 결성의 직접적인 목적이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유명신이 전한 말에 따르면 상관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쓰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목을 만들었다고 한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학문에 정진하기를 서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즉 상관회 회원들이 학문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約憲)을 만들어 서로서로 독려하며 경계하고자 했다는 것을 송시열이 기록한 유명신의 발언과 권성의 신도비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권성 외에도 이재가 쓴 「군수이공묘지」에서 상관회 구성원에 대한 또 다른 한 명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바로 이 묘지문의 주인공인 李鑿(1645-1701)이다. 이심의 아버지는 李端夏, 할아버지는 16세기 四大文章家 중의 하나

인 李植으로 덕수 이씨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이심은 1669년(현종 10)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681년(숙종 7)에 英陵參奉에 제수되었다가 의금부도사로, 1685년(숙종 11)에 金井察訪에 제수되어 사비를 털어 진휼한 공을 인정받아 수령에 제수되는 상을 받았다.¹⁵⁾ 그러나 이후에 진휼시에 공명첩으로 募屬을 확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당시 진휼청을 담당했던 부친 이단하에 까지 화가 미치자 사직하고 한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았지만, 1694년(숙종 20) 다시 堤川縣監이 되어 백성을 구휼하는 데에 힘썼다. 이심이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구휼에 업적이 있었던 것은 부친 이단하의 영향이었다.

이재의 「군수이공묘지」에는 이심이 사마시에 합격한 전후 상관회의 회원이 되어 동지들과 강학을 하였고, 이를 격려하고자 송시열이 「상관회서」를 써주었다고 전하고 있다. ‘일찍이 동지들과 매월 講學을 하였고, 우암선생이 상관회서를 작성하여 이들을 면려하였다.’(嘗結同志, 月講學, 尤菴先生作相觀會序以勉之.)는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권성의 신도비문에서도 상관회는 서로 학문을 권면하고자 약헌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심의 묘지문에서는 이들의 강학모임이 매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즉, 권성과 이심 두 인물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상관회는 ‘매월 강학을 위한 모임’이었음이 확실해진다.

상관회가 결성되었을 무렵 권성과 이심의 나이는 몇 살이었고, 거주지는 어디였을까? 이에 대한 정보는 상관회 구성원들의 물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상관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송시열이 「상관회서」를 작성한 때인 1670년 4월 이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 「상관회서」의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653년에 태어난 권성의 경우에는 18살로, 약관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권성은 서문이 작성된 해로부터 13년 후에 진사시, 17년 후에 문과에 급제하게 된다. 이심은 1645년에 출생했으므로 1670년 당시 26세로 역시 젊은 나이였으며,

15) 이하의 이심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모두 李緯의 문집인 『陶菴集』 권42, 「郡守李公墓誌」의 서술에 의거한다. 이심의 관력에 대한 내용은 『승정원일기』 281책, 숙종 7년 1월 22일 병자; 309책, 숙종 11년 6월 22일 신해.

이보다 한 해 전에 사마시에 합격한 생원이었다. 간략한 사실이긴 해도 이로 미루어 보면 권성과 이심은 청년이었고 상관회 회원들의 연령도 이들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송시열에게 서문을 부탁하러 온 유명신은 상관회 회원들이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吾儕里閭人) 하였다. 구체적인 인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성과 이심을 통하여 이들의 거주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성의 경우이다. 그는 1683년(숙종 9) 진사시, 1687년(숙종 13)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¹⁶⁾ 거주지가 韓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권성의 조부가 광해군 대에 한산으로 이주했고 이후 그의 집안이 이 곳에 거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권성의 아버지인 權讓은 1656년에 별시 병과에 합격하고 承文院權知副正字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이듬해에 그의 형인 權說과 함께 玄石江에 있던 從祖父 權鐸의 옛 집을 수리하여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권양은 내직과 외직을 고루 지내면서 관료 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도 그가 68세의 나이로 司諫을 역임하기까지 상당히 길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인 권성 역시 마포 서강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권양의 나이 60세일 때에 차남인 권성이 장원 급제를 하였는데, 그 시기에 권양은 執義로서 서울에 기거하였다. 결론적으로, 권성은 아버지인 권양과 백부인 권열의 서울 근거지인 마포 서강 일대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으로 이심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거주지는 그가 1669년 생원시에 합격할 당시 서울(京)로 기록되어 있다.¹⁷⁾ 그의 부친인 이단하는 1644년(인조 22) 별시에 합격하여 효종대에 본격적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며 외직과 내직을 두루 겸했고, 특히 그의 장남인 이심이 상관회를 결성하여 유생들과 강학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70년 전후에는 이조정랑, 승지, 이조참의 등의 내직에 근무하였다. 이심의 거주지가 애초에 서울이었던 사

16) 『肅廟九年癸亥十月十五日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古6024-205), 『國朝文科榜目』 권 3(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6)

17) 『己酉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17])

실과 부친인 이단하의 중앙정계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이심 역시 상관회 결성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실해진다. 다만 서울 내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알 수 없으나 권성의 정보에서 알 수 있는 마포 서강 일대 주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 「상관회서」에서 유명신이 같은 동네에 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종합하여 본다면 상관회는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던 20대 전후의 젊은 유생들이 강학을 위하여 결성한 모임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앞서 「상관회서」에서는 상관회가 조직된 이유에 대하여 강학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반면, 권성과 이심에 대한 인물 기록을 통하여 이들이 강학을 위하여 매달 모였으며 아마도 마포 일대에 거주하는 유생들이 그 구성원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관회는 서원이나 향교 같은 강학을 위한 기관을 바탕으로 결성된 모임은 아니었으나, 여씨향약의 약헌을 기준으로 삼아 구성원 상호가 규율하고 단속하며 배움을 논하는 조직화된 강학 모임이었다. 상관회 회원들인 서울의 젊은 유생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율에 따라 모이고 공통의 관사에 대하여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였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시험 같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주입하고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여기에는 이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 배움의 방식, 학문의 계보 등에 대한 상호 동의가 전제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상관회 회원인 권성과 이심은 가문의 내력과 출사 이후의 정치적 행보 등을 보았을 때 이들은 모두 서인 노론계열의 정파적 성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비슷한 도통의식과 학문적 경향 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상관회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유명신이 송시열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즉, 상관회 구성원들은 지식 습득 이상의 목적을 가진 학문 공동체 속에 있었다. 이 자율적 학문 공동체의 외연을 유지하고 규율하는 수단이 여씨향약을 모방한 규약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향

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향약의 전통 속에서 강학을 위한 학문 공동체가 운영된 증거는 주지하듯이 중국 송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상관회 약헌의 모델이 된 「여씨향약」, 정확히는 이것을 주희가 개정한 「증손여씨향약」이다. 「여씨향약」의 呂大勻은 자신이 속한 지방사회조직에서 구성원들의 도덕적 행위를 권장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규율할 시스템으로써 향약을 제정하였고, 呂祖謙과 주희는 이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규범을 위하여 일종의 맹약으로 활용하였다. 주희가 백록동 서원에서 시행한 향약이 바로 「여씨향약」을 개정한 「증손여씨향약」이었다. 향약을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화를 위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행 단위가 지방사회나 학교, 또는 특정 목적하에 모인 일정한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조선에서도 주희의 여씨향약을 수용하여 지방사회를 사대부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기획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졌다. 다만 주로 운영주체의 측면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또는 지방사회 안에서의 사족들 사이의 권력의 주도권 문제와 그의 미에 집중하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조선에서의 향약 실천 문제는 그것이 교화(도덕화) 기획이었다는 데에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지방 유력자들의 자치의 수단으로 기획되어 중앙정부의 행정 통치를 보조 또는 견제했다고 알려진 향약 이외에 다른 방식의 향약 활용이 존재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희가 학교 내의 규범으로 향약을 활용했던 것처럼 말이다.

상관회의 구성원들은 강학을 위한 학문 공동체의 운영을 위하여 향약을 채택하였다. 그들이 모델로 삼은 주자가 편집한 여씨향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여대균의 과실상규, 환난상휼, 예속상교, 덕업상권에 대한 조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 뒷부분은 주희 자신이 만든 月旦集會의 의례 절차이다.¹⁸⁾ 아마도 상관회의 운영 절차는 주희 향약

18) 『朱子大全』 권74, 「增損呂氏鄉約」

의 뒷부분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여대균으로부터 내려오는 앞부분의 내용은 상관회 모임의 기본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강령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앞서 「상관회서」에서 유명신이 송시열에게 수정을 부탁했다는 상관회 條制의 구체적인 면모가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측을 통하여 그 모습을 이같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상관회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7세기 서울 모 지역에 사는 젊은 유생들은 매월 강학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여씨향약의 조문을 모방한 규례에 따라 강학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향약의 전통 속에서 강학 모임을 진행한다고 여기고 이러한 사실을 송시열에게 알려 모임의 명칭을 짓고 서문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송시열은 이들이 향약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은 높이 여기면서도 서울에서 ‘향’약을 실천하는 것은 명칭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모임의 명칭은 향약이 아니라 정호와 사마광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관회’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송시열의 찬한 상관회 서문과 상관회 구성원이었던 권성과 이심의 신도비문과 묘지문을 통하여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기록을 통하여 상관회의 결성 목적과 배경, 일부 구성원의 면면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17세기 중후반 상관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난다. 유명신 등의 상관회 구성원의 인식, 「상관회서」를 작성한 송시열의 인식, 이심의 묘지문과 권성의 신도비문을 작성한 이재가 대표하는 후대의 인식이다. 아래에서는 상관회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상관회의 정체성에 대한 각각의 인식에는 향약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17세기 중후반과 그 이후 조선에서의 향약에 대한 인식까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상관회 정체성에 대한 구성원들 스스로의 인식이다. 이는 「상관회서」에 기록된 유명신의 발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관회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서울 안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유생들이 강학을 위하여 서로를 독려하고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모임에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행동의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여씨향약의 조문을 이용하여 약헌을 마련하였다. 여대균의 여씨향약을 주희가 편집하고 보강하여 백록동서원의 운영에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관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강학 모임의 운영과 상호 규율을 위하여 이 향약을 모델로 한 자신들의 향약을 만들었다. 즉, 그들은 스스로 향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상관회는 강학 모임이자 향약의 실천 단위였다.

송시열의 상관회 성격에 대한 인식은 상관회 회원들과 공유하는 면이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일단 송시열은 이들의 향약 시행의 지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그는 「상관회서」에서 향약의 유래와 역사, 조선에서의 향약 도입과 현황 등을 열거하면서 이황의 禮安鄉約과 이이의 坡州鄉約 이후 정치적 상황과 전쟁 등으로 조선에서 향약의 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¹⁹⁾ 서문 작성 당시의 조선에서 향약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관회 구성원들이 무너진 향약의 법을 제대로 세우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좋은 시기가 오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지금 여러 군자들이 개연히 여기에 뜻을 두고 단연코 이를 시행하려 하니, 이는 좋은 때가 오려는 기회이다. (중략) 하물며 퇴계선생은 그 시골이 王靈에서 멀기에 도가 막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율곡선생은 과거가 兩京의 옆에 있기

19) 『송자대전』 권138, 「相觀會序」, “我朝立國以來, 屢以此頒下州縣, 而民莫肯聽從, 長民者亦怠而置之, 惟靜菴先生當路之日, 緊著行之, 而不悅者專事譏諷, 群居之士, 稍自修飭, 則目之以小學之契, 譏諷不已, 而卒釀大禍, 善類殲焉. 嗚呼, 其不幸也哉. 幸而明宣之際, 世教復明, 鄉約之議漸起, 退溪先生修之於禮安, 栗谷先生行之於坡州, 蔚有成效, 士習復正, 厥後數十年, 旋被姦兇割剝, 至於大倫大經, 亦皆數塞, 則佗又何說, 逮夫聖祖之世, 屢值夷亂, 未遑教法, 以至於今, 則有不可言者矣.”

에 王化가 먼저 온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여러 군자들이 수도에서 살고 있어 집적된 문헌이 먼 밖에서도 우러러볼 정도이므로 이미 퇴계가 한탄하던 상황과 다르고 올곡이 말한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 (향약을) 講行하는 것이 어찌 쉽지 않겠으며, 물 흐르듯이 흘러 다시 막히지 않겠는가.²⁰⁾

또한 이들이 사는 곳은 王化가 잘 미치고 문명이 갖춰진 수도라서 향약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지방보다 쉬울 것이라, 예안과 파주에서 향약을 시행했던 이황과 이이 같은 선현보다 향약 시행의 조건이 낫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을 종합하면, 송시열은 강학을 위하여 모인 상관회 구성원들이 향약의 전통을 잘 알고 시행하려 하는 의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향약의 근본 정신을 잘 살려 계승할 것을 권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송시열은 상관회가 향약을 시행하는 학문 공동체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을까? 즉, 상관회 회원들이 상관회를 스스로 규정한 방식에 대하여 같은 생각일까? 앞서 ‘상관회’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이유를 살펴보았듯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상관회를 부르는 명칭에 있어서는, 수도에서 ‘향’으로 이 맹약을 호명하는 것은 (실상에) 제목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강학 모임의 명칭에 ‘향약’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향약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학문 공동체의 운영에 활용하는 것에는 긍정하였으나, 이름에는 향약의 명칭을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한 것이 송시열의 생각이었다. 어떤 대상을 호명하는 명칭에 그 대상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송시열의 이와 같은 인식은 서울 유생들의 강학 공동체는 향약 시행 모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었다.

송시열이 보기에 향약의 실천 단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공간’에 있었다. 즉, 향약이라는 명칭 자체가 수도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써의 ‘지방적’

20) 『송자대전』 권138, 「相觀會序」, “今諸君子慨然有志於斯, 斷然行之, 此其陽復之期乎. 夫在匹夫之勢, 爲法所拘, 而不得行其志者何限. 今此事尙屬自己, 而私相講明, 不係公衆, 則其孰能禦之, 亦幸有慕而從之者矣, 而況退溪先生以其鄉遠於王靈, 而以道泥不行爲歎, 栗谷先生以其州廁於兩京, 而以王化所先爲說, 今諸君子游居輦轂之下, 文獻之所萃會, 遠外之所觀瞻, 則既異乎退溪之所歎, 而尤進於栗谷之所說矣, 講行之豈不易易, 而流行之又不滂沛乎.”

‘향촌적’ 공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다. 향약의 애초 모델인 여씨향약 여대균이 『주례』의 정전제에 감화되어 지방사회조직을 위한 자기규율적 모델을 구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향약이라는 명칭과 실상이 지방적인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시열의 향약에 대한 인식은 향약이 만들어진 애초의 의도에 충실한 것이다.

그가 쓴 「懷德鄉案序」에는 향약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회덕향안은 17세기 중반에 중수한 충청도 회덕 지역의 향안으로, 당시 회덕 지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은진송씨가 주도하여 중수하였다. 이때 향안의 개정을 주도한 인물은 「회덕향안서」에는 宋浚吉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송시열은 1672년(현종 13) 9월 송준길의 부탁을 받고 향안의 서문을 작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회덕향안서」에는 송시열의 향약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등장한다. 특히 이 서문이 작성된 때는 그가 「상관회서」를 써 준 1670년과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송시열의 향약에 대한 인식이 상관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향안의 하방에 기록된 鄉約의 제도는 비록 오늘날에는 갑자기 거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참으로 이런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 집안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선하게 하는 방도가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곧 금세와 후세의 군자에게 바라는 바이다.²¹⁾

회덕향안은 필사본 1책으로 회덕 지방의 유력 성씨의 구성원 명단인 향안과 향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인용문에 향안의 하방에 기록된 향약의 제도란 대략 여씨향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의미한다. 이어서 부록으로 향약 조직의 규약을 수록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벌칙 조항에서는 極罰, 上罰, 中罰, 下罰, 下次罰 등으로 나누어 세

21) 『송자대전』 권138, 「懷德鄉案序」, “其下方所錄鄉約之法, 雖不能遵行於今日, 然人人苟知有此道理, 則其正家善俗之方, 不外於此, 此則不能無望於今與後之君子也.”

부 조항을 기록하였다. 송시열은 이러한 향약의 제도가 회덕에서 갑자기 거행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향약의 기본 정신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집안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선하게(正家善俗)’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송시열에게 향약은 家, 가가 확장된 향촌의(鄉)風과 관계된 것이었다. 같은 글에서 그는 “일향(一鄉)은 반드시 일가(一家)에 근본한 것이고, 일가는 또 일신(一身)에 근본한 것”이라며 一身-一家-一鄉의 확장적 구조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향약은 명확하게 일향, 향촌과 관계된 제도였다.

이러한 송시열의 향약에 대한 규정을 이해한다면, 그가 「상관회서」에서 향약의 정신을 실천하려 하는 강학 공동체의 구성원을 독려하였으면서도 그 모임의 명칭에서는 왜 ‘향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여씨향약을 수정하고 편집한 주희는 향약이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자기 규율과 상호연대 및 의무를 위한 규약이라는 더욱 넓고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백록동 서원 운영을 위한 규약으로 사용하였다. 상관회 구성원들이 여씨향약에 바탕을 둔 약헌을 만들어 자신들의 강학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에 활용한 것 역시 주희의 아이디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송시열은 주희가 확장한 향약의 의미가 아닌 애초 향약의 의미에 무게를 두었다.

‘향약’의 지방성에 집중한 송시열의 인식은 이후 조선에서는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권성의 신도비문과 이심의 묘지문에 쓰여진 상관회 관련 내용 중에 이 모임이 애초에 향약을 표방하며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상관회서」의 유명신의 발언에서는 분명히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동지들과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서로를 규제할 조목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성의 신도비문과 이심의 묘지문을 지은 이재는 이러한 맥락을 전하지 않고 다만 상관회는 ‘강학을 위한 공동체’라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18세기 당시 심화되기 시작한 경향분기에 따른 수도(京)와 지방(鄉)의 명확한 구분 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에 정조가 전 인민의 도덕화를 위하여 모든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화를 도울 鄉禮의 국가적 시행을 독려하며 편찬한 『鄉禮合編』에는 다시 상관회가 언급된다. 이 책의 「총서」 부분에는 향음주례의 연혁에 이어 향약에 대한 조선과 중국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 중 하나로써 상관회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의 맥락이 흥미롭다. 바로 현종대 서울의 학생들이 향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일을 송시열에게 부탁했는데, 송시열이 수도에서 향약이라는 이름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름을 상관회로 지어주었다는 일화가 수록된 것이다.²²⁾ 즉, 향약의 명칭은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상관회의 사례를 수록한 것이다. 다만 백성을 교화하고 좋은 풍속을 만든다는 향약의 기본 정신은 여전히 수도에서도 장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발언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서,²³⁾ 향약이 내포한 이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상관회의 성격에 대한 세 가지 인식, 즉 상관회 구성원, 송시열, 이재를 비롯한 후대의 인식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였다. 특히 ‘향약’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향약의 확장적 적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17세기 중후반 상관회라는 강학을 위한 서울의 학문 공동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일화는 이 시기 향약에 대한 인식의 교차점을 시사한다.

5. 맺음말

1670년경에 서울의 마포 일대에 거주하던 젊은 유생들이 결성한 상관회는 강학을 위한 학문 공동체였다. 이들은 중국 송대 여씨향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규율하고 상호간의 연대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약헌을 만들었다. 향약을 실천한다는 자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들의 모임

22) 『향례합편』과 관련된 내용은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1, 125-137쪽에 의거하였다.

23) 『정조실록』 46, 정조 21년 6월 2일 신미.

결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송시열에게 서문과 약헌의 수정을 부탁하였고, 이에 송시열은 이들의 행동을 기념하고 격려하면서도 수도에서 ‘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임의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친목과 선행을 독려한다는 의미로 사마광과 정호의 고사를 인용하여 ‘상관회’로 그 명칭을 정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후대에 이재의 기록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전해졌는데, 이때에는 상관회의 구성원들이 향약을 실천하는 차원의 강학 모임을 결성했다는 맥락은 생략되고, 단지 강학회로써의 상관회의 면모만 전달되었다.

상관회 명칭과 그 기본 성격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향약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회서」에는 향약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이 상관회의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 혹은 향촌사회라는 공간에 확연하게 의지한 제도가 향약이라는 것이 현대의 지배적인 인식이고 여씨향약의 출발 지점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향약 실천이라는 상관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향약이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주회가 확장한 공동체의 자기 규율을 위한 제도로써 한층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향약에 대한 17세기 조선에서의 인식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상관회의 사례에 한정하기보다는 당시 서울(京)과 향촌(鄉)에 대한 공간적 구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관회와 같이 강학을 위한 다른 모임의 사례까지 폭넓게 고찰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송자대전』

『도암집』

『朱子大全』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34 : 조선 후기의 사회』, 1995.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1.

이태진,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사회사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19, 1991.

성주탁, 『懷德鄉約』, 『대전문화』5, 1996.

이성무, 『呂氏鄉約과 朱子增損呂氏鄉約』, 『진단학보』71, 1971.

한상권,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 『진단학보』58, 1984.

Sangganhoe(相觀會) in 17th-century Seoul and the Hyangyak(鄉約) beyond ‘Local(鄉)’

Lee Minjung*

Around 1670, a group of young students living in the Mapo of Seoul formed the Sangguanhoe(相觀會), a community for learning. They drew up a constitution to regulate themselves and define their mutual solidarity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呂氏鄉約. They were conscious of practicing hyangyak(鄉約), and to commemorate their formation, they asked Song Shi yul(宋時烈) to write a preface and revise the constitution, and he wrote the 「相觀會序」 to commemorate and encourage their actions. However, it was not appropriate to use a name with the word “hyangyak” in the capital, so the name was changed to “Sangganhoe” which means to encourage fellowship and good deeds. This fact was later transmitted once again by 李緯, who omitted the context that the members of the Sangguanhoe formed a community for learning to practice hyangyak, and only conveyed the aspect of the Sangguanhoe as a community for learning.

The changes over time in the name and basic nature of the Sangguanhoe demonstrat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hyangyak. The Book of the Sangguanhoe shows that different perceptions of hyangyak defined the identity of the Sangguanhoe differently. The dominant perception in contemporary scholarship is that the institution of hyangyak relied heavily on the space of provincial or village society, and this is where it originated. However, the willingness of the members of the Sangguanhoe to practice hyangyak in Seoul

* SNU GSIS, Lecturer

reminds us that hyangyak was able to transcend its spatial limitations and be used extensively and universally as a system for community self-discipline.

Key words: Sangguanhoe(相觀會), Song Shi yul(宋時烈), hyangyak(鄉約),
a community for learning, capital, local